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가단50076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임남구, 김유신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슬아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30,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8. 1. C과, 피보험자 및 상해수익자 C, 사망수익자 C의 상속인, 보험기간 2000. 8. 1.부터 2036. 8. 1.까지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수익자에게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를 지급하는 'D'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22. C과, 피보험자 및 상해수익자 C, 사망수익자 C의 상속인, 보험기간 2004. 7. 22.부터 2998. 3. 22.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수익자에게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를 지급하는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2005. 6. 1.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 2005. 6.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관하여, 각 피보험자는 C으로 유지하되, 각 보험계약자 및 상해수익자를 C에서 C의 아들인 피고로, 각 사망수익자를 C의 상속인에서 피고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05. 6. 6.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상해수익자는 C에서 피고로, 사망수익자는 C의 상속인에서 피고로 각 변경되었다.

라. C은 사실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상적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08. 1. 22.부터 2014. 8. 7.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험금 합계 48,830,045원을 지급하였다(위와 같이 지급된 보험금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마.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1. 14.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506),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2016. 4. 20. C의 항소가 기각되어(광주지방법원 2016노3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는데, 처음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입원치료를 이유로 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해 주고, C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보험금은 C이 모두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참조).

2)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함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 소견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료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 참조).

3)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48,830,045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에는 반환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어머니인 C이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을 인출하여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사전에 C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데 따른 것으로 C과 피고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인 48,830,0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